

#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1
----------	-----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의자 : 김진희, 박성찬, 이영환,  
이철영, 박은경

## 1. 제안 이유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를 도모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

라.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양주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2. 동네 환경개선 지원
3.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4.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5.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6.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3.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원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행복마을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9조(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비밀유지) 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임무 상 취득 또는 보관하는 자료,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 등)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에 의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관내 행복마을관리소
- 지원내용 :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비
- 지원금액 : 예산편성 범위 내
- 산출기초(도비 50%, 시비 50%)
  -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신규 설치시) : 55,000천원
  - 인건비(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10명 급여,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등) :  
336,674천원 \* 3개소 = 1,010,022천원
  - 운영 및 사업비 : 46,000천원 \* 3개소 = 138,000천원

##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6,252	1,149	1,200	1,248	1,302	1,353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0	-	-	-	-	-
인건비	5,562	1,011	1,062	1,110	1,164	1,215
운영 및 사업비	690	138	138	138	138	138

※ 현재 설치된 3개소(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은 2021년 설치로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예산편성 불필요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 이유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149,000	1,200,000	1,248,000	1,302,000	1,353,000	6,252,000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1,149,000	1,200,000	1,248,000	1,302,000	1,353,000	6,252,000
재원 조달		1,149,000	1,200,000	1,248,000	1,302,000	1,353,000	6,252,000
의존 재원	소 계	574,500	600,000	624,000	651,000	676,500	3,126,000
	보조금	574,500	600,000	624,000	651,000	676,500	3,126,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74,500	600,000	624,000	651,000	676,500	3,126,000
	지방세	574,500	600,000	624,000	651,000	676,500	3,12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